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지침

제정 2018.11.05.

개정 2026.04.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이 재학 중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학업을 계속하면서 창업 실전에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성공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교육 학사제도' 라 함은 창업휴학과 창업대체학점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를 말한다.
2. '창업휴학' 이라 함은 휴학사유를 창업으로 휴학을 허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창업대체학점' 이라 함은 창업 준비활동 및 창업활동을 통해 학습목표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2장 위원회

제3조(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①창업교육 학사제도의 중요사항은 「창업지원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창업지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대학 내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계획 및 추진방안 마련
2. 창업휴학, 창업대체학점 인정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개설하는 창업강좌 인정 심의
4. 기타 창업교육 학사제도 전반에 관한 업무

제4조(운영 등) 위원회는 창업지원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며, 이 경우 위원회 구성, 임기, 회의, 간사,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창업지원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창업휴학

제5조(창업휴학) ①창업휴학이 인정되는 창업은 학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한다. 다만, 관련전공 분야의 창업이 아니더라도 사회적기업 및 아이디어 창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②창업휴학은 제7조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며, 매 학기별로 휴학신청기간 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센터에 신청하여 확인을 득한 후, 일반휴학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 신청한다.

③창업휴학의 정량적 조건이 만족되더라도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창업휴학기간) ①창업휴학은 1년 단위로 하며, 재학 중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창업휴학은 일반휴학 횟수에 산입한다.

제7조(창업휴학 신청자격) ①창업휴학은 창업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창업을 한 자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휴학을 신청한 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공동대표 포함)로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창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1항에 따른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창업관련 교과목의 인정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8조(제출서류) ①창업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신청기간에 [별지1~2]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 성적증명서(창업교과목 이수 확인용)

②창업휴학을 연장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2~3]의 서류를 센터에 제출하여 허가 받아야 한다.

제9조(심의 및 심의절차) ①센터는 제8조의 서류를 접수받아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의 자격 여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자격여부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의 휴·폐업 여부
2.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
3. 전공과의 적합성 여부

③센터는 신청자의 자격여부 확인 후 창업휴학 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에서는 제8조의 제출서류와 자격여부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휴학 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제4장 창업대체학점

제10조(창업대체학점 인정교과의 명칭)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교과목명	개설학기	학점	성적처리	비고
창업활동 I, II	1~2학기	3학점	P/F	창업동아리 활동
창업실현 I, II				창업실현 활동
창업학기실습2-1, 2-2, 3-1, 3-2, 심화		10~27학점		현장실습 운영규정 준용

제11조(신청자격) ①‘창업활동’ 을 신청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창업관련 교과목 중 3학점 이상 취득
2. 센터에서 인정한 창업동아리 회원

②‘창업실현’ 을 신청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1학년 이상 수료
2. 창업관련 교과목 중 최소 6학점 이상 취득
3. 사업자등록을 필한 창업자(공동대표 포함)
4. 신청 학생이 이수하는 전공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의 상호 관련성
5. 제4호 업종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

③ '창업학기실습' 을 신청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졸업학기 재학생
2. 창업관련 교과목 중 최소 9학점 이상 취득
3. 사업자등록을 필한 창업자(공동대표 포함)
4. 신청 학생이 이수하는 전공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의 상호 관련성
5. 제4호 업종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

제12조(신청시기 및 제출서류) 창업대체학점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기간에 해당 교과목을 수강신청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강신청 후 10일 이내에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활동: 창업동아리 신청서[별지4]
2. 창업(학기)실습: 창업(학기)실습 신청서[별지5]

제13조(창업대체학점의 성적 인정) 학생은 학기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성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활동: 창업동아리 지도일지[별지6]_10회 이상, [별표1]의 창업교육(행사) 또는 사업 참가 증빙서류_2회 이상
2. 창업실습: 창업(학기)실습 종합보고서[별지7], [별표1]의 창업교육(행사) 또는 사업 참가 증빙서류_3회 이상
3. 창업학기실습: 창업(학기)실습 종합보고서[별지7], [별표1]의 창업교육(행사) 또는 사업 참가 증빙서류_5회 이상, 종합정보시스템의 실습 일지 및 출석부(주 40시간, 12주 이상)

제14조(성적평가 및 이수인정) ① 실습생의 성적평가는 위원회에서 전조의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센터장이 [별지8] 창업대체학점 성적인정 평가서에 평가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최종 성적처리 결과를 성적처리 기한 내 관련부서 및 소속스쿨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① 이 규정은 2018년 11월 0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2026년 0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관련 내용에 대한 학칙과 시행세칙 반영에 따라 시행일과 적용일이 달라질 수 있다.